

<p>○ 서울시 전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 1개 보관소를 4,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p> <p>그러나 '96.1.1.부터는 사무주체와 비용부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관소를 구청장이 운영토록할 계획인바, 이에 따라 현행 주차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예산 조항을 삭제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p> <p>○ 세입조항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중 서울특별시 수입분이며</p> <p>○ 세출조항은 주차관리 및 주차질서확립부문 인건비, 경상적 경비입니다.</p> <p>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p> <p>아무췌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되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p> <p>.....</p> <p>감사합니다.</p> <p>○ 委員長 李昌根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p> <p>.....</p> <p>1.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p> <p>2. 제안이유 ○ 기존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방식이 교통관리계정, 주차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각각 독립된 계정으로 하던 것을</p> <p>○ 그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련 분야 예산의 지원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에서 하던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운영계정에 편성하고자 함.</p> <p>3. 주요골자 ○ 조례 제5조(주차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를 삭제하고 본 규정을 조례안 제4조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각각 삽입 함.</p>	<p>○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토록 함(조례안 제4조)</p> <p>3. 검토요지</p> <p>○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정을 두는 것은 특정사업을 위하여 특정 수입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그 분야에만 집행토록 하여 사업의 소관 영역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임.</p> <p>따라서 그 동안 주차담당관실 업무로 주차장건설 및 관리예산을 별도의 계정으로 편성·주차장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만 집행토록 하였음.</p> <p>○ 따라서 그 동안 주차장건설 및 관리사업을 위하여 특정세입, 즉,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세입, 정부보조금,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이 주차관리계정 세입에 포함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특정세입과 세출간의 흐름을 정확히 알수 있었음.</p> <p>○ 한편, '9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예산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관리계정 482억원 -주차관리계정 660억원 -교통방송운영계정 8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적은 예산을 너무 세부적으로 계정을 나누워 편성·집행할 경우 회계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정적 요소도 있다고 생각함. <p>○ 그러므로 회계에 있어서 계정의 설치 및 폐지의 문제는 특정 세입이 반드시 특정사업에 집행되도록 하는 목적세적 측면 즉,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발생한 수입은 반드시 주차장건설 및 관리에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교통정책 전반적 집행에 있어서 특정세입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즉,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탄력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방법간의 상호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p> <p>○ 한편, 그 동안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p>
--	---

에 의거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 일반회계에 편성,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해 온 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교통관련 예산을 한 회계로 통합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지금까지 條例案에 대한 交通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 質疑와 答辯이 있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交通局長을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始英委員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始英委員 李始英委員입니다.

먼저번에 小委員會에서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을 檢討했습니다. 小委員會에서 여러 가지를 檢討한 결과 조금 전에도 專門委員이 提案說明한 것과 같이 저희들 小委員會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事案別로 조금씩 疑問가는 것은 우리 小委員會 委員님들이 하나하나 交通局長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昌根 그러면 다음에 金喜甲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喜甲委員 金喜甲委員입니다.

本委員은 條例에 어떤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점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고 하니 지금 그 동안 交通事業特別會計內에 駐車場運營管理計定 자체가 너무나 放漫하게 運營되어 왔다, 이점 만큼은 交通局長이 반드시 是認을 하고 이것이 그 동안 交通事業特別會計內에 駐車場運營計定 自體를, 가령 예를 들면 放漫한 運營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이 駐車場運營計定과 交通事業運營計定을 統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條例改正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指摘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요일인가요, 그 때도 特別會計에 대해서 決算審議를 할 때 問題됐던 것은 상당히 많은 額數 자체가 不用됐던 점, 그리고 더군다나 事故移越된 109億원 정도도 6億 2,000萬원이 不用되거나, 또 豫備費도 4億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도 不用시킨 점들이 이런 것은 그 동안 제가 나름대로 特別會計의 어떤 放漫한·運營上에 問題가 있었다라는 점, 이점 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本 條例案이 通過됨으로 인해서 駐車場建設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歲出로 駐車場管理計定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동안 駐車場建設만 이렇게 됐던 부분들 일텐데 이 부분이 統合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25個 各 區廳에 널려져 있는 駐車場建設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條例의 구체적인 內容을 보니까 現行 條例案의 第5條第3項 서울特別市 收入分에 대해서는 自治區로 완전히 移管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서울시 收入分이, 이것은 歲入에 대한 얘기인데 歲入에서 約 한 54億원 정도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54億원의 歲入의 차질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駐車管理計定 科目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現行 條例 第5條第1項 부분이 削除가 됐는데 이 第5條第2項의 1번 일니까? 駐車管理 및 駐車秩序確立 部分, 人件費하고 經常的 經費가 통합되면서 改正案에서는 削除가 됐는데 이것이 보통 交通牽引과 관련된 約 한 4億 1,000萬원의 收入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自治區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歲入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問題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昌根 交通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諸他龍 交通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